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41
----------	------

2021년 12월 31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1. 10. 15.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회부일자 : 2021. 11. 1.
4. 상정일자 :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2. 3.)
  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21. 12. 31.)
    - 수정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평생교육진로국장 함혜성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남북관계,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남북교육교류협력사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941호, 「**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 계획안**」은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# 2.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

- **생태전환교육기금**은 생태전환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'21년 7월,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가 정한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신설·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 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①기금운용총칙과 ②자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고, ①기금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으며, ②자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함

(1) 기금 조성 개요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'22년도에 10억 600만원을 조성계획하고, 5억원을 집행계획하여 '22년도 말 조성액을 5억 600만원으로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

〈표 3-1〉 기금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2021년도 말 조성액 ①	2022년도		2022년도 말 조성액 ④=①+②-③
	조성계획 ②	사용계획 ③	
-	1,006	500	506

(2) 기금 수지현황

- '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기금수지총액은 10억 600만원으로 동 기금운용계획안중 수입계획의 경우, ①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(10억원)과 ②예금이자수입(600만원)을 수입계획하고,

〈표 3-2〉 기금 수지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입계획					지출계획				
항목	2022년도 수입액	2021년도 수입액	증감		항목	2022년도 지출액	2021년도 지출액	증감	
			비율	비율				비율	비율
합계	1,006	-	1,006	순증	합계	1,006	-	1,006	순증
교특회계 전입금	1,000	-	1,000	순증	비용자성 사업비	500	-	500	순증
이자수입	6	-	6	순증	예치금	506	-	506	순증

〈표 3-3〉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과목				2022년 수입액 (A)	2021년 수입액 (B)	증 감 (A-B)
장	관	항	목			
합 계				1,006	-	순증
내부거래				1,000	-	순증
	전입금			1,000	-	순증
		전입금		1,000	-	순증
			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1,000	-	순증
자체수입				6	-	순증
	이자수입			6	-	순증
		이자수입		6	-	순증
			예금이자수입	6	-	순증

○ 수지균형에 따라 **지출계획**의 경우, 정책사업인 ①**교수-학습활동지원**중 기타 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원을 지출계획하고, ②**예비비 및 기타**로 5억 6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함

- ①**교수-학습활동지원**중 기타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은 농촌유학사업으로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에서 초·중학생들에게 농촌유학 및 농촌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타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확인됨

〈표 3-4〉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2022년 지출액	2021년 지출액	증 감
합 계					1,006	-	순증
유아및초중등교육					500	-	순증
교수-학습활동지원					500	-	순증
교육과정운영					500	-	순증
교육과정운영지원					500	-	순증
생태전환교육기금					500	-	순증
기타특별회계전출금					500	-	순증
예비비					506	-	순증
예비비및기타					506	-	순증
예비비및기타					506	-	순증
내부유보금					506	-	순증
예치금					506	-	순증

○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한 바,

- 동 조례는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출계획한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의 경우, 타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

- 만일 동 지출계획과 같이 타 시·도로 전출하고자 할 경우, 관련 조례중 타 시·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

○ 아울러 관련 법령에는 “회계와 기금간, 회계 상호간 그리고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

있도록” 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

-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**통합재정안정화기금**을 운용하지 않아 이른바 ‘우회 진출’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

### (3) 기타 검토

#### ① 기금총괄부서(기금총괄관리관)의 역할 필요

- 행정안전부의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전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총괄부서(기금총괄관리관)와 사전협의·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집행부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
-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안전으로 제출할 때 지출계획의 사업구조 및 과목 설정 등 기금운용계획 작성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상시적으로 준수되지 않아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동일한 지적과 개선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바,
- 기금총괄부서(기금총괄관리관)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다는 반증으로 향후 각 기금운용계획안중 수입·지출계획의 사업구조 및 과목 설정 등 기금운용계획 작성의 기본적인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,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기준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기금총괄부서(기금총괄관리관) 차원의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안내 및 개별 기금운용부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## ② '예치금' 에 대한 사업별 예산구조 수정 필요

- 동 기금의 경우, 정책사업 '**예비비 및 기타**' 의 세부사업중 '예치금'을 신설하여 5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
- **예치금**은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,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
- 그러나 교육부의 「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지출계획중 '분야·부문'은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이 정하는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고,
  - 교육부의 「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정책사업에 '**재무활동**' 을 신설하고,
  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는 '**재무활동**'의 하위범위로 **보전지출(예치금)**이 해당되기에 예치금 항목은 '**예비비 및 기타**'가 아닌 '**재무활동**'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  - 다만 교육부의 「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**재무활동**의 하위 단위사업으로 '**보전지출**'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예치금의 역할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「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'**보전지출**'이 신설 되도록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적합한 사업별 예산구조에 부합하여 지출계획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매년 개정되는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기준을 검토하고, 제도가 미흡할 경우 편성전 개선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



〈표 3-5〉 예산구조 수정 필요내역

지출계획 (제출안)					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
[160]예비비					
	[161]예비비				
		[01]예비비및기타			
			[01]예비비및기타		
				예치금	
					예치금



지출계획 (수정의견)					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
[050]교육					
	[054]교육일반				
		[03]재무활동			
			보전지출		
				예치금	
					예치금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 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## 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### 1) 소위원회 구성

○ 일 자 : 2021. 12. 15(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○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
○ 위원구성 : 2022년도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4명)

- 위 원 장 : 김호평(도시계획관리)

- 부위원장 : 임종국(행정자치), 김종무(도시계획관리)

- 위 원 : 채유미(행정자치), 이태성(기획경제),  
신정호(환경수자원), 송정빈(환경수자원),  
경만선(문화체육관광), 김태호(문화체육관광),  
박기재(보건복지), 이경선(도시계획관리),  
문장길(도시안전건설), 이승미(교통),  
이동현(교육)

## 2)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

### 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16(목) 14:00 ~ 20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원칙(심사 기준 등) 마련

### 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17(금) 10:30 ~ 22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 운영

### ○ 제3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18(토) 10:30 ~ 18:3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### ○ 제4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19(일) 10:0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○ 제5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20(월) 10:00 ~ 21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○ 제6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21(화) 10:00 ~ 21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○ 제7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22(수) 10:00 ~ 21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○ 제8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23(목) 11:00 ~ 21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#### ○ 제9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24(금) 10:00 ~ 21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#### ○ 제10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26(일) 11:00 ~ 27(월) 02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#### ○ 제1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27(월) 11:00 ~ 21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#### ○ 제1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28(화) 11:00 ~ 2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#### ○ 제13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29(수) 11:00 ~ 21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#### ○ 제14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1. 12. 30(목) 11:00 ~ 15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

### 3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발의

- 일 시 : 2021. 12. 31(금) 16:00 (제4차 예결특위)
- 발 의 자 : 김호평 위원장
- 수정내용 : 별첨
-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- 기타내용 :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수정된 예산안을 집행할 때,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(부대의결 등)를 준수할 것

## VII. 수정안의 요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심의 수당이 기본경비에 편성되지 않은 바,
- 지출계획 중 예치금은 5억 600만원에서 120만원 감액한 5억 480만원으로 하고, 기본경비는 120만원 순증함

## VIII. 부대 의결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기금의 용도)<sup>1)</sup>는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중 기타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은 기금을 다른 회계는 물론 타 시·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음
- 따라서 정책사업인 교수-학습활동지원에 지출계획된 기타특별회계전출금 5억원 전액을 삭감하고, 예치금으로 증액(5억원) 하여야 함
- 그러나 동 기금사업이 **전라남도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어**

---

1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1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.

1. 제5조에서 정한 생태전환교육 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3.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의 지원

## 행정기관간 상호신뢰가 확보될 필요성을 고려하여
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조례에 근거없는 지출계획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·도 교육청간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정책사업인 교수-학습활동지원에 지출계획된 기타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
- 다만, 조례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적극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정책사업인 교수-학습활동지원에 지출계획된 기타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은 조례개정후 지출원인행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함
- 조례개정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, 개정전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1항2)에 따라 시정요구하고, 결재자 전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것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의결하고자 함

## IX. 심사결과 : 수정가결 (2021. 12. 31.)

---

###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(결산)

- ① (전문생략)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

#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41
----------	------------

2021년 12월 31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장

## 1. 수정 이유

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하여, 기본경비(심사 수당) 지출 증액 및 예치금 지출 감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## 2. 수정 주요 내용

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하여 심사·의결 내역과 같이 수정·의결한다.

**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**  
**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·의결 내역**  
**(2021. 12. 31.)**

기금운용계획안 수정 내역

제출안				수정안			
<기금수지 총괄> (단위 : 천원)				<기금수지 총괄> (단위 : 천원)			
수입 계획				수입 계획			
합계	교특회계 전입금	이자수입	예치금회수	합계	교특회계 전입금	이자수입	예치금회수
1,006,000	1,000,000	6,000	-	1,006,000	1,000,000	6,000	-
(단위 : 천원)				(단위 : 천원)			
지출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합계	비용자성 사업비	기본경비	예치금	합계	비용자성 사업비	기본경비	예치금
1,006,000	500,000	-	<u>506,000</u>	1,006,000	500,000	<u>1,200</u>	<u>504,800</u>

기금 조성 증감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원안	수정안	증감액
지출	계	1,006,000	1,006,000	0
	비용자성사업비	500,000	500,000	
	기본경비	-	1,200	1,200
	예치금	506,000	504,800	△1,200